

옥천군 공고 제2019 - 609호

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10일

옥 천 군 수



1. 자치법규명: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

2. 개정이유

- 학과성적 우선주의로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이 제한되고 자유학년제 도입 등 성적 외 활동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, 장학금 지급대상 등을 정비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저소득층 중·고등학생들의 성취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장학금 지급대상을 학업성적 향상자, 예체능 부분 발전가능성 보유자, 우수한 자원봉사활동자로 정비 (안 제2조)
- 장학금 신청기한을 매년 하반기로 정함 (안 제3조)

- 장학금 지급기한을 장학생 선발 후 10일 이내로 정함 (안 제4조)
- 장학금 지급 중단 사유에 차상위계층의 자격상실 포함 (안 제5조)

4. 의견 제출

-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30일까지 옥천군수(참조 : 주민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eun12345@korea.kr
- 2) 주소 :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
- 3) 팩스 : 043-731-1985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주민복지과(전화 043-730-3311, 3313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붙임

-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-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“학업성적이 우수하고”라 함은 최근학년의 이수한 학업성적이 학년석차 100분의 50이내인””을 ““각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기량 및 성취도를 나타내고”라 함은 평소 바른 학업태도로 전 학기 대비 상당한 성적 향상을 이룬 경우, 예·체능 부문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경우, 우수한 자원봉사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이 밖에도 기타 분야에서 자질이 뛰어난 중·고등학생을 해당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추천하도록 한다.

제3조 중 “학년도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”를 “매년 하반기 군수가 정하는 기간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매학기 개시 후 60일”을 “장학생 선발 후 10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9조”를 “제8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수급자”를 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장학생 추천서

1. 소속 : 학교(과 학년 반)
2. 성명 : (한자)
3. 주소 :
4. 생년월일 :

위 사람은 본교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.

가. 추천분야

- 학업태도 - 상당한 성적 향상 등
- 예체능 특기자
- 자원봉사활동 우수자
- 기타 분야 ()

나. 추천이유 : *추천분야에 따른 해당사항 기술 및 관련자료 첨부*

년 월 일

학교장 성명 : (직인)

옥 천 군 수 귀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① 「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8조제1항의 <u>“학업성적이 우수하고”</u> 라 함은 <u>최근학년의 이수한 학업성적이 학년석차 100분의 50이내인 경우를 말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의한 학업성적에 있어서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의 성적으로 하며,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교육과정의 성적이 우수하며 행실이 바른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.</u></p> <p>제3조(장학금의 신청)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<u>학년도 학기 개시후 20일 이내</u>에 옥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장학금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를 해당 학교장의 추천(별지 제2호서식)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① ---- ----- ----- ----- <u>“각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기량 및 성취도를 나타내고”라 함은 평소 바른 학업태도로 전 학기 대비 상당한 성적향상을 이룬 경우, 예·체능 부문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경우, 우수한 자원봉사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-----.</u></p> <p>② <u>이 밖에도 기타 분야에서 자질이 뛰어난 중·고등학생을 해당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추천하도록 한다.</u></p> <p>제3조(장학금의 신청) ----- ----- -----<u>매년 하반기</u> 군수가 정하는 기간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<p>제4조(장학금의 지급) ②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<u>매학기 개시 후 60일</u> 이내에 선발된 장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장학금 지급의 정지) ① 조례 <u>제9조</u>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정지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지원대상자가 <u>수급자</u>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	<p>제4조(장학금의 지급) ② ----- -----<u>장학생</u> <u>선발 후 10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장학금 지급의 정지) ① 조례 <u>제8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<u>수급자</u> 또는 <u>차상위계층</u>-----
---	--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규칙명 :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규 칙 안	의 견